

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

용인송담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와 _____ 회사(이하 "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'회사'라 한다)는
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
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_____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용인송담대학교에 위탁 하는데
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위탁 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② 위탁의 모집학과별 위탁교육생 지원자수는 다음과 같다.

모집학년도	지원학과	지원 위탁생 수	비고
2018학년도	호텔관광과		

제3조 (위탁교육생의 자격)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
_____ 회사에서 근무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 (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입학) 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추천한다.
② 대학은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할 허가한다.
③ 위탁교육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또는 대학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 (교육과정의 편성) ① 본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별도
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(이 경우 별도 교육과정은 이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)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 (회사의 시설이용) 회사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,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
표로 첨부한다.

제7조 (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)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
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8조 (교육비 및 등록) ① 위탁교육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등록금 수준으로 하되, 회사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
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률을 명문화할 수 있다.
② 그 밖에 위탁교육생의 교육비와 관련된 세부사항 기재한다.

제9조 (위탁교육생의 신분) 본 약정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위탁교육생은 용인송담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대학의
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0조 (대학에 대한 회사의 지원)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의 본문 또는 별표에 명
시토록 한다.

제11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 대학과 회사는 약정에 따라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2조 (재직 여부 확인) ① 매년 3월, 9월(연2회)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사회보험 등 공적증명서로 확인한다.
②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발견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적 처리된다.
③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. 다만, 위탁생이 졸업에 필
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한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
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제적 여부를 결정한다.

201 . . .

대학명 : 용인송담대학교
총 장 최 성 식 (직인)

회사명 :
대표(이사) (직인)